

2023년도 담양군의회 임기제공무원(정책지원관) 임용시험 계획 공고

2023년도 담양군의회 임기제공무원(정책지원관)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.

2023년 5월 22일

담양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

1. 임용예정 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분야	직렬 (직류)	직급	인원	계약 기간	주요 업무내용
정책 지원관	행정 (일반행정)	지방행정주사보	1명	2년	-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- 의정활동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 - 의원 연구단체·세미나·토론회 개최 및 자료 작성 등 지원 - 의원 발의 조례안 작성 지원 -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- 의원의 군정질문서 작성 및 관련자료 추합분석
	시설 (일반시설)	지방시설주사보	1명		

※ 임용기간은 위와 같으며,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가능

2. 근거 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, 제27조제2항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조의 2, 제17조, 제21조의3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
-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

3. 응시 자격

가. 공통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응시연령 : 20세 이상(2003.12.31. 이전 출생자)
- 성 별 : 제한 없음
- 지역제한
 -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주·전남으로 1년 이상 거주자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외국인이 아닌 자)

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▶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<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>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▶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 등의 취업제한)

<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>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<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>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나. 직무 관련 자격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○ 임용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

분야	자 격 요 건
정책지원관 (일반행정)	《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》 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【관련분야】 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대학·대학원, 연구소 등에서 법, 행정, 경영, 재정, 회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* 공공기관: <u>경영정보공개시스템</u> 및 <u>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</u>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(alio.go.kr) (cleaneye.go.kr) (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 상세히 명시)
정책지원관 (일반시설)	※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【관련분야】 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대학·대학원, 연구소 등에서 건축, 토목 분야 야 업무 근무 경력 * 공공기관: <u>경영정보공개시스템</u> 및 <u>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</u>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(alio.go.kr) (cleaneye.go.kr) (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 상세히 명시)

※ 실무경력은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)

※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

4. 시험방법 및 일정

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, 학위, 경력 등이 임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
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 - * 평가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·논리성, 예의·품행·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
다. 최종선발

- 면접시험결과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하고, 최종합격자에 대해 공직임용 결격사유 조회(신원조회) 후 임용.

라. 시험 일정

응시원서 접수기간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일	면접시험일	최종합격자 발표일
'23. 6. 5.(월)~ 6. 9.(금)/5일간	'23. 6. 13.(화) 예정	'23.6.19.(월)예정	2023.6.20.(화) 예정

- *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개별 통보
- * 공고 및 발표는 전라남도 담양군의회 홈페이지 <http://dycouncil.go.kr> 의회소식(고시/공고)에 게시

5. 보수 수준

- 근거규정 :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(연봉 및 연봉한계액 등)
- 근무시간 : 1일 8시간, 주40시간 근무
- 신규임용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에 따라 당해 등급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 결정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	비 고
7급 상당	64,776	46,006	주40시간 근무 기준

6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- 원서교부 : 담양군의회 홈페이지 <http://dycouncil.go.kr>
의회소식(고시/공고)에 게시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 활용
- 접수일시 및 시간 : ‘23. 6. 5.(월) ~ ‘23. 6. 9.(금) 09:00~18:00
[공휴일, 점심시간 (12:00~ 13:00) 제외]
- 접 수 처 : 전남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(1층)
※주소 :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접수
 - 방문접수 :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접수처에 방문 제출
 - 등기접수 :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
 - ※등기우편 접수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 (☎061-380-3512) 로
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, 서류전형 합격 시 면접 시험
당일 응시표 배부
 -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

7. 제출 서류

① 응시원서 1부(별지 1호)

- 응시수수료 : 7,000원(수입증지)
- * 응시수수료는 담양군청 민원과에 납부 후 응시원서에 인증
- *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

② 이력서(붙임서식) 1부(별지 2호)

-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
-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(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)

③ 자기소개서(붙임 서식) 1부(별지3호)

④ 직무수행 계획서(붙임서식) 1부(별지4호)

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⑥ 주민등록 초본 1부

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(별지 5호)

⑧ 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서 1부(별지6호)

⑨ 경력(재직)증명서 1부

- 경력(재직)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, 경력(재직)증명서 제출경력만을 인정(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)
- 경력(재직)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날인과 연락처, 응시자의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, 근무기간, 상근/비상근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여야 함
 - *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반드시 명기
- 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, 경력(재직)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

⑩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(별지 7호)

⑪ 관련분야 경력사항 증빙서류 1부 (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)

○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

-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
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종

○ 소득금액증명서 (국세청 발급) 1부

- 무인민원발급기, 인터넷(www.hometax.go.kr),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
- 발급신청시 과세기간은 관련분야 근무기간(연도) 전체 설정

○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-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, 국세청의 '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' 추가 제출

⑫ 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

8. 기타 사항

-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확인이 불분명한 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. 단, 반환된 서류의 사본은 문서 보존기간까지 보관됩니다.
-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원서 접수일,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한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,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, 임용결격 사유,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보수와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합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임용령에 의한 시험, 그 밖의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.
-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연금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(공무원 연금법 제50조 제1항제1호)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동된 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(☎061-380-351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